

교 훈 고운 마음 큰 꿈	 서 림 알 리 미	담당	교사 홍미선
		문의	032) 629-1729
		상담시간	15:00~16:30

2024 교육활동보호 및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보호를 통하여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목적으로 교직원·학생·보호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교육활동 보호 교육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활동 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교원 연수, 학생 교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인천서림초등학교장

Q1. 왜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하나요?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 현장에 큰 피해를 줍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을 하는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에 「교원지위법」은 교권 보호·침해 대신 '교육활동 보호·침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Q2.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교권침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가.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상해, 폭행: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폭행),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상해)
- 협박: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
- 명예훼손: 공언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 모욕: 공언히(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 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라.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 기타 교권 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Q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구분	조치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3.27.자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폐지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또한 학생 외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로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결정된 경우 참여하지 아니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Q4. 자녀와 관련된 문제가 생긴 경우 학교와 어떻게 소통해야 하나요?

- 담임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희망할 경우- 교육활동 시간 중에는 통화가 어려우니 교무실로 전화하여 통화할 전화번호를 남겨 주시거나, 담임 선생님께 희망하는 시간을 문자로 남겨 주시면 교육 활동 후에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 학교 방문을 희망할 경우- ① 사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고 면담 시간을 정합니다. ② 행정실(또는 배움터지킴이실)에서 방문증을 받고 방문 기록을 남깁니다. ③ 방문증을 패용하고 담임 또는 희망하시는 분과 면담(상담)을 진행합니다.
- ※ 학생의 안전사고, 다툼,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학교에서는 학생간의 다툼과 폭력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폭 담당 전담경찰관을 통하여 사안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그렇기에 학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보호자의견서 및 자녀분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셔서 사안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Q5.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내용을 알려주세요.

- 학교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생활습관, 관계성 교육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가정 교육을 통한 내면화가 꼭 필요합니다.
-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육권은 서로 존중하는 관계임을 알려주세요.
- 교원과 학부모의 신뢰와 존중은 학생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전제 조건임을 기억해 주세요.

Q6.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곳을 알려주세요.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자료(교원용)를 참고하세요.
 - <https://forteacher.kedi.re.kr/web/board/list.do?mld=50&page=1>
 - <https://forteacher.kedi.re.kr/web/board/list.do?mld=70>
- 경남 행복 교권 드림센터
 - <https://sites.google.com/g.gne.go.kr/forteaheer/%EC%9D%B4%EC%9D%8C%EA%B5%90%EC%8B%A4>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내용

영역	주요 내용
폭행·상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폭행 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고,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며 신체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신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을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협박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협박 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하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뜻하며, 구체적이며 실체적인 피해가 예측되어야 함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경우 · 피해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을 기자와 교육청에 말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모욕·명예훼손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모욕 은 공연히(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하고, 명예훼손은 공연히 특정 사람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교원의 외모를 지칭하며 경멸적으로 말하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손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1) 손괴 는 다른 사람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부수거나, 숨기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막는 것을 의미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이물질을 담임교사 차량의 에어컨 배기구에 부어 손상을 입힌 경우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는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 및 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강요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 시 허리, 종아리, 허벅지 등 일반인의 시작에서 접촉이 꺼려지는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 ·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1)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① 비방할 목적으로 다수에게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이야기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 ②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보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이 역시 구체적 진실을 전달하더라도 그것이 상대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 “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 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 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는 적법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협박, 혹은 위계로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함.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직무 중인 교원에 대해 폭행·협박행위를 하는 경우, 직무/업무라는 법익 또한 침해되었으므로 교육공무원인 교원인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면,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 경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성적 언동(말과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 ‘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1)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는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장관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유형일지라도 학교장이 교원 존중에 위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 교사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교사의 말을 듣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 *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